

IV. 기타사례

증인이 성관계 사실을 시인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한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전주지방법원 2006. 1. 26.자 판결 (2005고단1203)

사실개요

전주지방법원(판사 황정수)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모 신문 사회부 기자 김○○(이하 피고)에 대해 3,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는 소속 신문 2005년 3월 23일자 1면에 『김△△ 군수 성매매의혹 사건 재판 핵심 증인 성관계 시인』 제하로 “〈속보〉 김△△ □□군수의 미성년자 성매매의혹사건(명예훼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사건 핵심인물이 군수와 성관계 사실을 시인해 향후 법정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 게재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됐다.

피고는 변론을 통해 “증인 김□□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되어 김□□의 진술 내용을 직접 듣지 못한 상태에서, 휴정 중에 변호인인 하○○ 변호사로부터 ‘김□□이 바로 시인을 했다’, ‘김□□은 군수인지 부군수인지 모르겠지만 배에 칼자국이 있는 사람과 잠자리를 했다고 말했다’ 라는 말을 들었고, 앞서 진행된 피해자 □□군수 김△△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피해자 □□군수 김△△가 자신의 배에 칼자국이 있다고 증언한 바가 있어 피해자 □□군수 김△△와 성관계를 맺은 것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하○○ 변호사가 피고인을 포함한 기자들에게 ‘김□□이 군수인지 부군수인지 모르겠지만 배에 칼자국이 있는 사람과 잠자리를 했다고 말했다’ 라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김□□이 피해자 □□군수 김△△와의 성관계를 시인하였다는 말을 하지는 아니하

였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고인이 김□□과 피해자 □□군수 김△△ 사이의 성관계 사실이 진실인 것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범죄사실 기재 내용은 증인 김□□의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을 보도하는 것으로서 하○○ 변호사의 전언에 의하더라도 김□□이 법정에서 피해자 □□군수 김△△와의 성관계 사실을 시인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점을 능히 알 수 있었음에도 마치 김□□이 피해자 □□군수 김△△와의 성관계 사실을 시인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한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당시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사정 및 피고인이 직접 들은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 피해자 □□군수 김△△의 증언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해자 □□군수 김△△와 김□□과의 성관계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군수 김△△를 비방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군수 김△△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피해자 □□군수 김△△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판 결 문

사 건 : 2005고단1203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명예훼손

피 고 인 : 김 ○ ○, 새○○신문기자

검 사 : 이 성 일

변 호 인 : 변호사 유 충 권

판결선고 : 2006. 1. 26.

주 문 :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의 점은 무죄

이 유 :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새○○신문 사회부기자인바, 2005. 3. 22.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소재 전주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공소의 한○○ 피고인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피고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증인 김□□이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피해자 김△△ □□군수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5. 3. 22.경 “김△△ 군수 성매매의혹 사건 재판 핵심증인 성관계 시인”이라는 제목으로 「〈속보〉 김△△ □□군수의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사건(명예훼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사건 핵심인물이 군수와 성관계 사실을 시인해 향후 법정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여, 다음날인 3. 23. 새○○신문 제1면에 위와 같은 내용이 게재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김△△, 전○○ 작성의 각 진술서

1. 하○○ 작성의 우편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증인신문조서 등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증인 김□□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되어 김□□의 진술 내용을 직접 듣지 못한 상태에서, 휴정 중에 변호인인 하○○ 변호사로부터 ‘김□□이 바로 시인을 했다’, ‘김□□은 군수인지 부군수인지 모르겠지만 배에 칼자국이 있는 사람과 잠자리를 했다고 말했다’라는 말을 들었고, 앞서 진행된 피해자 □□군수 김△△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배에 칼자국이 있다고 증언한 바가 있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하○○ 작성의 진술서와 오○○, 최○○이 소송 진행 중 제출한 각 진술서에 의하면, 위 하○○ 변호사는 피고인을 포함한 기자들에게 김□□이 군수인지 부군수인지 모르겠지만 배에 칼자국이 있는 사람과 잠자리를 했다고 말했다라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김□□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인하였다는 말을 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고인이 위 김□□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사실이 진실인 것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위 범죄사실 기재 내용은 증인 김□□의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을 보도하는 것으로서 위 하○○ 변호사의 전언에 의하더라도 위 김□□이 법정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시인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점을 능히 알 수 있었음에도 마치 위 김□□이 피해자와의 성

관계 사실을 시인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한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신문을 통한 허위 사실의 보도는 그로 인한 피해의 범위가 넓고 그 회복이 매우 어려운 점, 언론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어 가는 현실에서 신문기자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보도윤리 및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기는 하나,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비공개 하에서 진행된 증인신문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접 증언을 들을 수 없었던 데 원인이 있었던 점, 하○○ 변호사의 전언 내용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실관계에 대하여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주었던 점, 실제로 1심 재판결과 당해 재판부가 피해자와 김□□과의 성관계 사실을 인정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고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05. 3. 23.경 위 범죄사실 기재의 기사내용에 대하여 피해자 김△△ □□군수로부터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수회 정정보도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김 군수로 추정되는 사람과 성관계”라는 제목으로 「바로잡습니다. 본지가 지난 23일 1면에 보도한 ‘김△△ 군수 성매매 의혹사건 재판 핵심증인 성관계 시인’ 표현을 ‘군수로 추정되는 사람과 성관계 증언’으로 바로잡습니다. 본지의 이 같은 표현은 지난 22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김 군수 명예훼손사건 증인신문에서 김군수로부터 고소당한 한 모 씨 측 핵심증인인 김 모 양의 비공개 증인신문과 ... 증언에서 김 양이 김 군수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황 증언에 따른 것입니다... 이 같은 증언을 종합하면 김 양은 김 군수와 성관계 사실을 직접적으로 시인하기 보다는 김 군수로 추정되는 사람과 성

관계를 가졌다는 표현이 보다 정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여, 다음날인 3. 24. 새○○신문에 위와 같은 내용이 게재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김△△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동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라는 점에 관하여 살핀다.

2. 피고인의 변소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의가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녹음테이프 검증결과 및 하○○ 변호사의 진술 내용, 정○○, 김◇◇, 천○○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김군수와 추정되는 사람과 성관계'라는 표현으로 바로 잡았고, 피고인은 위 내용을 사실로 믿었으며, 피해자 김△△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변소한다.

3. 판단

수사기록 제9, 10쪽에 편철된 신문기사, 수사보고(관련 공판조서 등 사본 첨부보고), 하○○ 작성의 우편진술서에 의하면, 2005. 3. 23.자 첫 번째 기사 내용은 그 첫 부분에 유죄로 인정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과 달리 김□□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아래 부분은 피고인이 취재과정에서 변호인으로부터 들은 내용과 피해자의 증언 내용 및 녹음테이프 검증결과 등 당시 재판과정에서의 공방 내용을 사실대로 서술하고 있는 점, 위 기사에 대하여 피해자가 정정보도를 요구하면서 김□□의 증언과 관련하여 문제삼은 것은 '핵심증인 성관계 시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부분인 점, 이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부분을 '군수로 추정되는 사람과 성관계 증언'이라는 문구로 바로잡으면서, 김□□이 비공개 증인신문에서 '군수인지 부군수인지 모르지만 배에 칼자국이 난 사람과 잠자리를 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고 변호인인 하○○ 변호사가 설명하였고, 위 김□□에 대한 녹음테이프에서 김□□이 당시 □□군수와 2~3차례 잠자리를 가졌다고 증언했고, 주변 관계인들도 김□□의 이 같은 증언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증언하였는데, 이를 종합하면 군수로 추정되는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표현이 보다 정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점, 실제로 하○○ 변호사가 김□□의 증인신문 후 피고인을 포함한 기자들에게 김□□이 군수인지 부군수인지 모르겠지만 배에 칼자국이 있는 사람과 잠자리를 했다고 진술하였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도 당일 이루어진 증인신문에서 자신의 배에 20cm 정도의 상처가 있다고 진술한 점, 그 후 이루어진 녹음테이프 검증에서도 위 김□□이 당시 □□군수와 2~3차례 잠자리를 가졌다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 이후 계속된 소송절차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는 김□□의 실제 증언내용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증인 김○○, 이○

○의 증인신문절차는 비공개로 이루어져 피고인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던 데 반해 피해자와 김□□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증인 장○○, 천○○, 김○, 김○○, 배○○, 김○○의 증인신문절차는 공개로 이루어져 피고인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김□□에 대한 증인신문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어 위 증인신문절차에 참여한 사람으로부터 간접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던 피고인으로서 그 전에 이루어진 피해자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하○○ 변호사로부터 전해들은 김□□의 증언 내용을 ‘군수로 추정되는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생각할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었고, 그 이후에 공개로 진행되어 피고인이 직접 들을 수 있었던 녹음테이프 검증결과와 장○○, 천○○, 김○, 김○○, 배○○, 김○○의 증언 내용이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정요구에 대하여 피고인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그에 부합하게 표현을 고쳐서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이 위 기사를 작성할 당시에 위 기사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김△△, 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속한 새○○ 신문의 바둑대회 광고협찬 및 □□태권도공원 조성방향 연구 용역 수주 요구를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의사로 위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거나 이러한 사실이 피고인의 기사게재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위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사정 및 피고인이 직접 들은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 피해자의 증언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해자와 김□□과의 성관계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 이외에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황 정 수

□

**잡지에 게재된 기사와 사진이 이미 다른 매체를 통해
대부분 인터넷상에 공개된 것으로 보이며
그 내용의 취지 및 독자에게 전달하는 인상이
부정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6.자 결정 (2006카합651)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송진현 부장판사)는 과거 텔런트로 활동했던 차○
○이 조선일보생활미디어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학원사를 상대로 낸
'출판물 발행·판매·배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각각 발행하는 여성조선 2006년 3월호, 여성동아 2006년 3월호, 주
부생활 2006년 3월호 신문광고와 기사에 마치 신청인이 자신의 가정생활 및 근황에 대하여
심경을 고백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게재하는 등으로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청인
및 그 가족의 사생활, 현 주거지 및 신청인이 다니는 교회 등을 공개하여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나아가 신청인의 허락 없이 신청인의 사진을 게재하여 초상권을
침해하는 등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이유로 출판물 발행·판매·배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피신청인들이 발행하는 여성 잡지의 각 2006년 3
월호의 광고 및 기사에 신청인과 그 가족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연예계 활동 당시 또는 근래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신청인의 사진 내지 방송화면이
게재되어 있으며, 여성조선과 주부생활의 경우, 제목 및 그 표현에 있어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기사내용의 상당 부분이 신청인과의 인터뷰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점 등은 소명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처분
으로써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출판물의 배포 및 판매 등을 금지시킬 경우, 피신청인들로
서는 본안소송에서 다투어 볼 기회조차 없이 그 영업, 신용 등에 상당한 위협을 받게 될
수 있고, 이러한 피해는 후에 쉽게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이러한 가

처분을 발령하는 데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의 경우보다 높은 소명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신청인들의 여성 잡지의 광고 및 기사가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청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신청인들이 잡지에 게재한 기사 내용 대부분이 이미 다른 인터넷 뉴스 매체를 통하여 인터넷상에 널리 유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진 역시 인터넷에 공개된 것이거나 신청인의 동의하에 촬영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이들 기사의 전반적인 취지 및 일반 독자들에게 주는 이미지가 그다지 부정적인 인상을 주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 상태에서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결정을 발령하여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의 출판물 발행·판매·배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 결 문

사 건 : 2006카합651 출판물발행판매배포등금지가처분

신 청 인 : 차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길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손 영 호

피신청인 : 1. 조선일보생활미디어 주식회사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2-4

대표이사 이 창 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태 수

2.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학 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 용 현

3. 주식회사 학원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 서초프라자

대표이사 이 용 모, 최 옥 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재 만

주 문 :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1. 가. 피신청인 조선일보생활미디어 주식회사(이하 '조선일보생활미디어' 라 한다)는 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여성조선 2006년 3월호' 의,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이하 '동아일보사' 라 한다)는 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여성동아 2006년 3월호' 의, 주식회사 학원사(이하 '학원사' 라 한다)는 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주부생활 2006년 3월호' 의 각 광고 및 기사 등에 신청인에 대한 일체의 내용을 포함하고서는 이를 발행, 판매, 배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신청인들은 위 1의 가. 항 각 기재 출판물에 대하여, 온·오프라인을 포함하여 서적도, 소매업 및 대여업 영위 일체의 사업자에게 판매, 배포한 것 중 미판매분에 대하여 이를 즉각 회수하여야 한다.

다. 위 제1의 가., 나.항 각 기재 출판물에 대한 피신청인들의 각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2. 피신청인들은 제1의 가.항 각 기재 출판물에 신청인과 관련된 내용이 게재되었음 알리는 취지의 광고행위를 일체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가. 피신청인들은 제1의 가.항 각 기재 출판물상에 게재된 신청인과 관련한 내용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책, 주간지 또는 월간지 등 정기간행물, 보도자료, 속보 등의 인쇄물을 각 편집, 발행, 판매, 반포, 대여, 사용케 하거나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위 제3의 가.항의 경우 각 그 인쇄물에 대한 점유해제 및 집행관 보관을 명한다.

4. 피신청인들이 위 제1의 가., 나.항 및 제2항, 제3의 가.항을 각 위반하였을 경우, 각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각 위반행위 1건당 1억 원(1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유 : 신청인은 1986년부터 1987년까지 MBC 방송에서 방영된 '사랑과 야망'이라는 제목의 드라마에서 여주인공 '김미자' 역을 연기하면서 '차□□'이란 예명으로 활동하였으나 1988년 결혼 이후 연예계를 떠나 현재 가정주부로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피신청인들이 발행, 판매하는 각 월간 여성잡지 2006년 3월호의 신문광고 및 기사에 마치 신청인이 자신의 가정생활 및 근황에 대하여 심경을 고백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게재하는 등으로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청인 및 그 가족의 사생활, 현 주거지 및 신청인이 다니는 교회 등을 공개하여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나아가 신청인의 허락 없이 신청인의 사진을 게재하여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한다고 주장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들이 발행하는 여성 잡지의 각 2006년 3월호의 광고 및 기사에 신청인과 그 가족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연예계 활동 당시 또는 근래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신청인의 사진 내지 방송화면이 게재되어 있으며, 피신청인 조선일보생활미디어의 '여성조선 2006년 3월호'와 피신청인 학원사의 '주부생활 2006년 3월호'의 경우, 제목 및 그 표현에 있어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기사내용의 상당 부분이 신청인과의 인터뷰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점(반면, 피신청인 동아일보사의 여성동아 2006년 3월호의 경우, 인터뷰 기사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은 소명되나, 가처분으로써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출판물의 배포 및 판매 등을 금지시킬 경우, 피신청인들로서는 본안소송에서 다투어 볼 기회조차 없이 그 영업, 신용 등에 상당한 위협을 받게 될 수 있고, 이러한 피해는 후에 피신청인들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가처분을 발령하는 데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의 경우보다 높은 소명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신청인들의 여성 잡지의 광고 및 기사가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청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신청인들이 이들 잡지에 게재한 기사 내용 대부분이 이미 다른 인터넷 뉴스매체를 통하여 인터넷상에 널리 유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들 기사의 전반적인 취지가 1980년대 '사랑과 야망'이라는 TV드라마에 여주인공으로 출연하여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신청인이 1988년 결혼과 함께 화려한 연예계를 은퇴한 뒤 오랜 세월이 흐른 현재 평범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행복하게 지내면서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활동 및 신앙활동을 하기도 하는 등 연예인이 아닌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신청인에 대하여 주로 긍정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고, 게재된 사진 역시 이미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있던 것이거나 신청인의 동의하에 촬영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일반 독자들에게 주는 이미지에 있어서도 그다지 부정적인 인상을 주고 있지 아니한 점 및 기록상 소명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및 초상권 침해의 요건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 상태에서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결정을 발령하여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부족으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송진현

판사 이효제

판사 박진수

